

학생창업동아리 운영규정

제정 2014.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 창업동아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대학 내에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소속 창업동아리 간 정보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며 예비창업자의 자질 및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요건) 창업동아리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창업동아리이어야 한다.
2.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5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어야 한다.
3.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지도교수를 두어야 한다.

제3조(등록신청) 창업동아리로 신규 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동아리 등록 신청서
2. 창업동아리 회원 명단
3. 지도교수 취임 승락서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5. 회칙

제4조(승인) 제3조에 의하여 등록 신청한 창업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학처장이 결정한다.

제5조(임원) 창업동아리의 임원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창업동아리 임원의 선출 및 방법은 각 창업동아리 회칙에 따른다.
2. 임원의 변경 시에는 교학처장에게 명단을 제출한다.
3. 임원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및 지시에 임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교수) 창업동아리는 지도교수를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창업동아리로부터 추대 받은 전임교원을 교학처장이 위촉한다.
2. 지도교수는 소속 창업동아리가 원활한 활동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지도교수가 사임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창업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활동 및 행사 승인) 창업동아리의 활동 및 행사는 일주일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9조(등록취소) 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등

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동아리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2.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업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4. 본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10조(창업동아리연합회) 창업동아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동아리 연합회를 둘 수 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활동하고 있는 창업동아리는 이 규정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본다.